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월 10일, 한지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2.20.)

상정, 축조심사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8.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지아의원)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의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는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자살 위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해당 행위를 발견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의5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세일)

심리부검은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자살자의 심리·행동·양상 및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자살의 원인을 추정·검증하고 그에 기반하여 주변인의 죄책감과 고립감을 완화시키고 자살

예방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자살시도자의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개정안은 이를 고려하여 동의대상에서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을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이러한 취지에 따라 안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서도 심리부검의 대상에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은 배제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의 유통금지를 다루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의 체계에 따르면, 현행법에서의 자살유발정보와 같은 불법정보에 대한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정 요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시정 요구 불응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이와 같은 일반적인 체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절차를 구성하고 있는데, 자살유발정보의 삭제 및 차단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불법정보와 달리 이러한 별도의 특례를 두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19조의4제2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사항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유사한 취지로 보임.

또한, 안 제19조의4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모니터링센터의 장으로부터 자살유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및 차단 등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살유발정보와 관련된 자료’라는 표현은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고, 자살유발정보의 삭제·차단 협조 요청은 안 제19조의5제2항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는 개정안에서 자살유발정보의 차단 요청을 할 권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19조의4제4항은 삭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